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2019년 11월 11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. 11.(월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11. 8.(금)	담당부서	산업정책과
담당과장	이원주 과장(044-203-4210) 박지운 팀장(044-203-4230)	담 당 자	조정희 사무관(044-203-4231)

기업활력법, 사업재편 통한 신산업 투자 적극 지원

- 개정 기업활력법, 오는 13일 전면 시행 -

❶ 적용범위 확대 : 과잉공급 업종 기업(종전) + 신산업 진출 기업 + 산업위기지역 주된산업 기업

❷ 추가지원 : 산업용지 등 처분규제 완화,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% 적용,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적용요건 완화

❸ 공동사업재편 활성화 : 다수기업의 공동사업재편 심의기준 완화

❹ 법 유효기간 연장 : '19.8.12일(종전) ➜ '24.8.12일, 5년 연장

□ 「**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(기업활력법)**」이 **새롭게 바뀌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**된다. 그리고 **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**되어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뿐만 아니라, **인공지능(AI), 빅데이터나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기업** 또는 거제, 군산 등 **산업위기지역의 기업과 그 협력업체**까지 기업활력법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
□ **산업통상자원부(성윤모 장관)**는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**개정 기업활력법의 전면 시행을 이틀 앞두고**, 산업은행,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**주요 정책금융기관, 대한상공회의소,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주요 업종별 협회·단체 등과 오늘 기업활력법의 새로운 출범을 알리는 간담회를** 가졌다.

< 간담회 개요 > (⇒ 붙임1 참조)

○ 일시/장소 : '19.11.11.(월) 10:00 / 대한상공회의소

○ 참석자 : 산업부 차관, 산업정책관, 대한상공회의소,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,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협회·단체 및 산업은행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 관계자 등

○ 이 회의에서는 **지난 3년간의 기업활력법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향,** 자동차 등 **주요 업계의 사업재편 동향 및 사업재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금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**하고, **사업재편을 통한 신사업 투자가 원활히 진행**될 수 있도록 **기업활력법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논의**했다.

- 특히, **중소·중견기업의 경우** 신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개발, 공장 용지 확보, 설비투자 등 **각종 자금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**, 금번에 **새롭게 시행되는 세제 혜택(이월결손금 공제 확대)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** 등은 **기업의 사업재편 비용 부담을 상당부분 줄여 줄 수 있을 것**으로 내다 봤다.

□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금년 8월에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**법 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**되었고, 개정법에 새롭게 반영된 **신산업의 범위나 산업용지등 처분제한 특례 등에 관한 세부사항**을 규정하기 위한 **시행령과 사업재편실시지침 등 하위법령 개정·정비 절차도 이달 초 모두 마무리**됐다.

○ 새로 시행되는 **기업활력법의 가장 큰 변화는 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**된 것이다.

①과잉공급업종 기업		②신산업 진출 기업	③산업위기지역 기업
최근 3년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과거 10년평균보다 15%이상 감소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 * 가동률, 재고율, 과잉공급 지속성 등도 검토	+	1.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신성장동력 기술'을 활용 * 173개: 자율차, 인공지능, 의료기기·헬스케어 등 2.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·서비스 생산 산업 ※ 신산업 해당여부는 신산업 판정위원회(신설)에서 판정	「균특법」에 따라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'된 지역의 주된 산업의 기업 * 현재 6개 지정(군산, 울산 동구, 통영·고성, 거제, 창원 진해구, 영암·목포·해남) * 주된산업 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(매출비중 20% 이상)도 대상

- 종전에는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만 지원자격이 주어졌으나, 이제는 **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기업도 기업활력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.**

- **기업활력법에서 인정하는 신산업의 범위에는 '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기술'을 활용한 산업(제조업 또는 서비스업)** 또는 소위 **'규제샌드박스 4법'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**이 해당된다.

 ·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현재까지 11개 산업, 40개 분야, 173개 기술이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다. 금년에는 블록체인 및 양자컴퓨터 등이 추가되었으며 앞으로 분야별 대상기술이 계속 갱신될 것이다.

 · 규제샌드박스의 경우, **'규제샌드박스 4법'을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품목 및 서비스 군이 현재까지 총 84개인데 이러한 품목이나 서비스를 국내외 시장에 제조·판매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사업재편하려는 기업은 모두가 적용대상**이 된다. 앞으로도 **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받는 품목 등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신산업 범위가 확장**될 것으로 보인다.

 · 기업이 진출하려는 사업분야가 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번에 새로 구성된 신산업판정위원회가 그 사업의 시장성, 성장성, 파급효과 등 신산업적 가치를 평가하여 판정한다.

< 신산업의 구체적 범위 > (⇒ 붙임3 참조)

①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에 따른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활용하는 산업
 * (예시) 자율주행차 등 40개 분야 173개 기술

② 「산업융합 촉진법」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·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
 * (예시)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등 27개

③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기술·서비스를 활용하는 산업
 * (예시) QR코드 기반 O2O 결제서비스 등 20개

④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에 따른 지역혁신성장 사업을 통해 육성하려는 산업
 * (예시) 디지털 헬스케어 등 6개

⑤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
 * (예시) 블록체인 활용한 주식대차거래 서비스 등 31개

- 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는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상 **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(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)을 기준으로 적용**된다.

 · 즉, **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위기지역 내에 본점, 지점,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**과 **이 기업에 부품이나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적용대상에 포함**된다. 단, **협력업체의 경우**에는 **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의 거래비중이 20% 이상**(산업위기지역 지정 이전 3년간 매출액 기준)이 되어야 하며, 그 **산업위기지역이 속한 광역시·도 내에 사업장 등을 보유**하고 있다면 신청자격이 된다.

 * (예시) 군산의 경우, 주된 산업이 조선업이므로 군산내에 위치한 조선업을 영위하는 기업, 그리고 이 기업과 조선사업 부문에서 최근 3년간 20%이상 거래해 온 전북도내 부품협력업체는 적용대상임

< 산업위기지역과 주된 산업 현황('19.10월 기준) >

산업위기지역	주된 산업	산업위기지역	주된 산업
① 전북 군산	조선·자동차	④ 경남 거제	조선
② 울산 동구	조선	⑤ 창원 진해구	조선
③ 경남 통영·고성	조선	⑥ 전남 영암·목포·해남	조선

○ 또 달라진 점은 **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하면서 둘이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심의기준이 완화**된다. 예를 들면, 두 기업이 과잉공급 완화나 신산업 진출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, 기존에는 승인을 신청한 두 기업과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 모두가 각각 구조변경 요건 등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춰야만 했었다.

 · 그러나 이제는 **이전과는 달리 세 기업 각각이 전부가 아닌 일부 요건만 갖추어도 심의를 통과할 수 있고,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도 포함하여 공동사업재편에 관여한 모든 기업이 기업활력법상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.**

○ **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**됐다. 신사업으로 사업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,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 수요가 많아 **사업재편하는 기업들은 자금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을 가장 선호**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**세제·보조금 등 지원이 추가**됐다.

-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은 **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기업규모에 상관없이** 중소기업처럼 **이월결손금 100% 공제**를 받아 법인세 부담이 확 줄어든다.

 * 이월결손금 공제: 법인세를 계산할 때 최장 10년 이내 결손금(적자)을 빼주는 제도로서 적자를 낸 기업이 흑자로 전환되어 법인세를 내야 할 경우 과거 적자 규모를 공제한 후 세금을 계산함. 현행 법인세 규정상으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60%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음

☞ (예시) 2017년 적자 5억원이던 기업이 2018년 흑자 5억원을 낸 경우

① 이월결손금 60% 공제시: 흑자 5억원의 60%인 3억원을 뺀 2억원에만 2018년 법인세를 부과하며, 남은 적자 2억원은 2019년 법인세 계산 때 공제됨

② 이월결손금 100% 공제시: 흑자 5억원의 100%인 5억원을 빼면 2018년에는 흑자가 없으므로 부담해야할 법인세는 없음

- 기업이 지방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려할 때 받을 수 있는 **지방투자촉진보조금**도 **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게 문턱이 좀더 낮아졌다.** 이전에는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(폐쇄, 매각, 임대, 축소 금지)한 채 지방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해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자격요건이 되었으나, 승인기업은 **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 규모로 신규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.**

- **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경우**라면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산업집적법)」에 따른 **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.**

 · 산단 입주기업이 산업집적법 규제를 받으면 처분제한 기간 내에는 취득가격 수준으로만 산업용지 등을 처분할 수 있다. 그러나, **승인기업은 처분제한 기간 내에 산업용지등을 매각하는 경우라도 시장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.**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지만 조건은 있다. 처분때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그 양**도차익의 70% 이상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위해 신사업을 위한 공장·설비 등에 재투자**를 해야 한다.

□ 2016년 8월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재편 과정에 필요한 상법·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, 세제 등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.

○ 2016년 8월 시행이후 현재까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109개 기업이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고 있다. **109개사의 사업재편계획**을 종합해 보면 과잉공급 분야의 사업을 줄이고 신사업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기간 3년 동안 **약 2조 2천억 원의 투자계획과 약 2,000여명의 신규 고용계획도 포함**되어 있다.

* 승인기업 현황('19.10월 기준)
(규모별) 중소기업 91개(83.5%), 중견기업 11개(10.1%), 대기업 7개(6.4%)
(업종별) 조선 37개, 기계 18개, 철강 14개, 석유화학 11개, 섬유 5개, 유통·물류 6개, 전선 5개, 엔지니어링 3개, 반도체 3개, 자동차부품 2개, 기타 5개

- 승인기업 중 61개사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한 결과, **사업재편계획 대비 투자 이행률은 약 68% 수준으로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**되고 있으며, **고용의 경우에는 이미 3,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발생하여 계획대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조사**됐다. 최근 경영여건이나 시장상황을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에 비춰 선제적 사업재편의 순기능적 측면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.

□ **정승일 산업부 차관**은 간담회에서 "**4차 산업혁명 경쟁심화, 미·중 무역분쟁, 일본 수출규제 등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 속**에서 우리 업계의 **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업활력법이 효과적으로 지원**하여 **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으자**"고 당부했다.

(참고) 기업활력법 관련 문의 및 정보 제공

○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(02-6050-3831~7)
○ 기업활력법 종합포털(www.oneshot.or.kr)

【붙 임】 1. 간담회 개요
2. 기업활력법 주요 개정내용
3. 신산업의 주요 상세범위
4. 기업활력법 주요 지원내용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조정희 사무관(☎ 044-203-423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1 간담회 개요

□ **개최 배경**

○ **개정 기업활력법 전면 시행**(11.13일) **홍보**

○ **기업활력법 운영성과** 및 **제2기 운영방향을 공유**하고 **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방안 논의**

□ **행사 개요**

○ **일 시 : 2019.11.11.(월), 10:00~11:30**

○ **장 소 :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**(Executive Conference room)

○ **참석자 : 차관**, 산업정책관, 사업재편심의위원회(공동위원장), 정책금융기관 등 **기활법 지원기관***, 주요 **업종별 협회·단체**** 등 19명

* 대한상공회의소,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산업은행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

** 자동차, 조선, 철강, 화학, 기계, 섬유, 디스플레이, 전자·정보, 바이오

○ **주요 논의내용**

- **그간 기활법 운영성과 및 제2기 운영방향**
- **주요 업계 사업재편 동향 및 애로**
- **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한 자금 지원 방안**

□ **진행 계획**

시 간	주 요 내 용	비 고
10:00~10:06(06')	▪ 모두말씀	○차관 ○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(공동위원장)
10:06~10:10(04')	▪ 기활법 운영성과, 제2기 운영방향	기업정책팀장
10:10~11:28(78')	▪ 주요 업계 사업재편 동향 및 애로 ▪ 사업재편 지원 방안	참석자
11:28~11:30(02')	▪ 마무리 말씀	차관

붙임2 기업활력법 주요 개정내용

1 적용범위 확대 : (현행) 과잉공급업종 기업 → (추가) **신산업 진출** 및 **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**

①과잉공급업종 기업		②신산업 진출 기업	③산업위기지역 기업
최근 3년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과거 10년평균보다 15%이상 감소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 * 가동률, 재고율, 과잉공급 지속성 등도 검토	+	1.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신성장동력 기술*을 활용 * 173개: 자율차, 인공지능, 의료기기·헬스케어 등 2.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·서비스 생산 산업 ※ 신산업 해당여부는 신산업 판정위원회(신설)에서 판정	「균특법」에 따라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*된 지역의 주된 산업의 기업 * 현재 6개 지정(군산, 울산 동구, 통영·고성, 거제, 창원 진해구, 영암·목포·해남) * 주된산업 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(매출비중 20% 이상)도 대상

○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**정의**, **신산업판정위원회**, 사업재편 **기간설정** 등을 개정하고, 관련 조문 정비

○ **신산업 진출 기업에 한**하여 **상법(분할·합병) 및 공정거래법(지주회사 규제) 특례 적용을 배제**

* 상법특례 중 주식매수청구권 특례만 부여

2 공동사업재편 활성화 : **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신청할 경우의 심의기준 완화**

3 산업용지 처분 특례 신설 : 산업용지는 처분제한기간 이내는 취득가격 수준으로만 매각 가능(산업집적법) → **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시장가격으로 매각 허용**하되 **투기방지 안전장치*** 마련

* 양도차익의 70%를 사업재편 용도로만 사용토록하고, 위반시 과징금 부과

4 유효기간 연장 : '19.8.12일 일몰 → **'24.8.12일까지 5년 연장**

5 기타 미비점 보완 : 사업재편 승인 취소사유 명문화 등

붙임3 신산업의 주요 상세 범위

1.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

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**11개 산업, 40개 분야, 173개 기술을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**로 지정

* '19년 블록체인, 양자컴퓨터 등이 추가, () 해당기술의 개수

구 분	분 야	
1. 미래형자동차(10)	가. 자율 주행차(4)	나. 전기 구동차(6)
2. 지능정보(23)	가. 인공지능(5) 다. 클라우드(3) 마. 착용형스마트기기(5) 사. 블록체인(1)	나. 사물인터넷(3) 라. 빅데이터(2) 바. IT 융합(3) 아. 양자컴퓨터(1)
3. 차세대SW(소프트웨어) 및 보안(9)	가. 기반 SW(5)	나. 융합보안(4)
4. 콘텐츠(10)	가. 실감형 콘텐츠(6)	나. 문화콘텐츠(4)
5.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(15)	가. 지능형 반도체·센서(6) 다. OLED(5) 마. AR디바이스(1)	나. 반도체 등 소재(2) 라. 3D프린팅(1)
6. 차세대 방송통신(7)	가. 5G(5generation, 5세대)이동통신(4) 나. UHD(Ultra-High Definition)(3)	
7. 바이오·헬스(20)	가. 바이오·화합물의약(8) 다. 바이오 농수산·식품(5)	나. 의료기기·헬스케어(6) 라. 바이오 화장품 소재(1)
8. 에너지신산업·환경(39)	가. 에너지 저장 시스템(3) 다. 에너지효율향상(9) 마. 원자력(7)	나. 신재생에너지(9) 라. 온실가스저감 및 탄소자원화(11)
9. 융복합소재(13)	가. 고기능섬유(7) 다. 하이퍼 플라스틱(1)	나. 초경량 금속(3) 라. 타이타늄(2)
10. 로봇(16)	가.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(5) 다. 의료 및 생활 로봇(6)	나. 안전로봇(2) 라. 로봇공통(3)
11. 항공·우주(11)7	가. 무인이동체(8)	나. 우주(3)

2.「산업융합촉진법」상 산업융합 신제품 · 서비스 생산하는 산업

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	
·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	· DTC 유전체 분석 서비스
·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	·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
·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	·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
· 중앙집중식 산소발생시스템	· 에너지마켓 플레이스
·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화장품	·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 주방
·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	· 스마트 AED 판매
·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	· 태양광 연계 바나듐 레독스플로배터리 ESS
· 개인 맞춤 화장품원료·화장품	·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
· 전자저울 활용 스마트 이력 서비스	·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
· 라떼아트 3D 프린터	· 펩타이드 함유 Dermal Filler 의료기기
· 융복합 냉온동시 히트펌프	·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
· AR·AI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	· 부동산 온·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
·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	· 커피찌꺼기 활용 버섯배지 생산 및 버섯 재배 판매
· 계분건조를 통한 동물복지 친환경 농장	

3.「정보통신융합법」상 정보통신 융합 기술 · 서비스를 활용하는 산업

ICT분야 규제샌드박스 승인	
· 행정·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	·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
·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	·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
·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	·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
·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	· 가상현실(VR) 모션 시뮬레이터
· QR코드 기반 O2O 결제서비스	·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
· 모바일 운전 면허증 서비스	· 공유주방 플랫폼
· 택시 앱미터기 서비스	·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
· 가상현실(VR) 러닝머신 서비스	· 원격제어 누전 차단기
·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 심장관리 서비스	· 모바일 환전 서비스
·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·버스	·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

4.「지역특구법」상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통하여 육성하려는 산업

지역 규제샌드박스 승인	
· 블록체인	· 스마트 안전제어
· 디지털 헬스케어	· e-모빌리티
· 자율 주행차	·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

5.「금융혁신법」상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산업

금융 규제샌드박스 승인	
· 은행의 알뜰폰 이용 금융·통신 결합서비스	· 부동산 시세 자동평가 서비스
·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 서비스	·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
·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	· 소비·지출 관리 연동 소액투자서비스
·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 서비스	· 국내 해외송금업체에 대한 송금중개서비스
· 은행 지점 방문 없는 환전, 현금인출 서비스	· 용역거래 안심결제 서비스
· 개인간 비상장주식 거래 지원 서비스	· 연금 자산 포트폴리오 자문 서비스
· 비금융정보 활용 대안신용평가 서비스	·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방지 서비스
· AI 로보텔러의 보험상품 상담·판매 서비스	·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
· 스마트폰 NFC 기능을 이용한 결제서비스	·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
· 모바일 앱을 통한 계모임 플랫폼 제공 서비스	· 얼굴만으로 간편 결제 할 수 있는 서비스
· AI를 활용한 기업의 특허가치 자동평가 서비스	
· 해외 여행자보험 스위치(on-off) 가입·해지 서비스	
· 오프라인 매장의 온라인플랫폼 이용 시 결제정산대행 서비스	
· 온라인 쇼핑 플랫폼 활용 다이렉트 보험 e-쿠폰 제공 서비스	
·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의 온라인 안전결제 서비스	
·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제공 서비스	
·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조건을 비교·확인하는 서비스	
· 개인 판매자가 모바일 플랫폼 QR을 활용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	
·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P2P금융서비스	
· 금융투자상품권을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구매·선물하는 서비스	
· 포인트(선불 전자지급수단) 연계 체크카드 발급·결제 서비스	

붙임4 기업활력법 주요 지원내용

분 야	주요 지원 내용
기활법	▪(소규모분할) 자산규모 10% 이하 사업부문 분할시 절차 완화 * 이사회 결의로 갈음(주주총회 생략)
상법 관련	▪(주총 소집기간 단축) 7영업일 (상법: 2주)
	▪(채권자 보호절차 단축) 10일 (상법: 1개월)
	▪(주주: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) 10일 (상법: 20일) ▪(회사: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) (상장회사) 3개월 (상법: 1개월), (비상장회사) 6개월 (상법: 2개월)
공정거래법 관련	▪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지분규제 등 유예기간 연장: 3년(공정거래법: 1~2년)
	▪상호·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: 1년 (공정거래법: 6개월)
	▪상출제 집단내 기업간 채무보증금지 규제 유예기간 연장: 3년 (공정거래법: 2년)
세제	▪(법인세) - (양도차익) 자산매각으로 금융채무 상환 시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,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- **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(60%→100%)('20년 시행) [신규]**
	▪(등록면허세) 합병·증자 등 자본금 증가 시 등록면허세 50% 감면
산업집적법 관련	**▪ 산업용지 등 처분 제한 특례(승인기업은 시장가격으로 매각 허용) [신규]** *** 양도차익의 70% 이상을 사업재편 용도로 재투자 의무화, 위반시 과징금 부과**
자금	▪(정책자금)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
	▪(우대지원) 산은·기은, 기보·신보 등 융자·보증 시 금리·요율 등 우대 * (산은) △0.2~△0.5%p, (기은) △1%p, (기보·신보) △0.2%p 등
	▪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(기존 사업장 축소불가→축소가능) [신규]
고용안정	▪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완화 및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비율 확대 ▪실직자 재취업 패키지 지원요건 완화
중소·중견	▪스마트공장 구축사업, 해외마케팅사업(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, 수출금융) 참여 우대
연구개발	▪정부 R&D사업 우대가점, 중소·중견기업 과제수행 한도(중소3, 중견5) 및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적용, 기술료 납부유예 등